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3079
------	------

2022. 2. 14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월 21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25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22.2.14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조정실장 김의승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규칙을 대상으로 제정·개정·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, 조례로 위임된 규칙 제정·개정·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규칙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함
(안 제23조~제30조까지 신설).
 -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, 제출 제외대상을 명시함
(안 제23조~제25조까지).
 - 의견제출 검토 및 보완요구, 결과통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
(안 제26조, 제27조).
 - 의견 반영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8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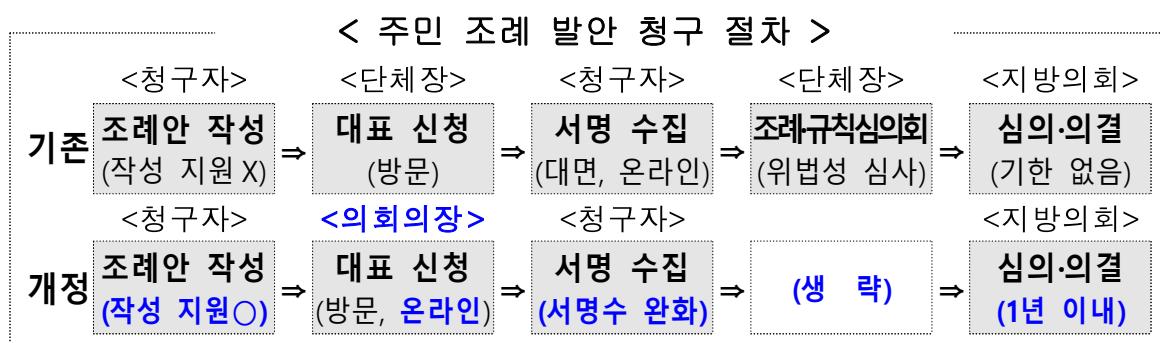
III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을 통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권이 신설됨에 따라 의견제출과 검토, 결과 통보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지방자치법 개정사항

-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‘법’)이 전부개정되면서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 구현과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.
- 특히 주민주권의 구현을 위한 직접참정제도가 신설되면서 주민 직접발안제도와 규칙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권이 도입되었음.
 - 법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사항을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22.1.13. 시행)로 분리 제정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.



- 주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정과 개정 ·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신설되고 세부적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.¹⁾

- 서울시는 이 중 규칙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권에 관한 사항을 행정 안전부의 자치법규안을 참고하여 별도의 제정안이 아닌 현행 조례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음.

다.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개정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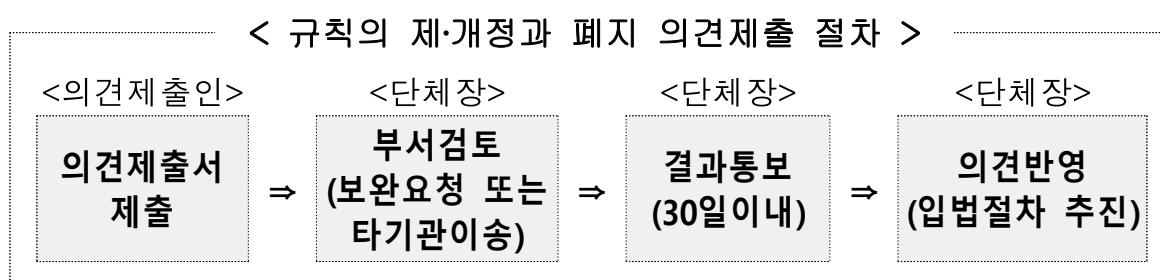
-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주민의 규칙 제 · 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,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.

< 조문별 주요내용 >

조 항	조 제 목	주요내용
안 제23조	주민의 규칙 의견제출	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제출 제외대상을 명시
안 제24조	의견제출 제외대상	
안 제25조	의견제출서 작성방법	
안 제26조	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	제출서류 보완요구와
안 제27조	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	30일 내의 결과통보
안 제28조	의견의 반영	입법절차 추진
안 제29조	차별대우의 금지 등	
안 제30조	비밀 준수의 의무 등	의견제출에 대한 보호조치

-
- 1) 「지방자치법 제20조」(규칙의 제정과 개정 · 폐지 의견 제출)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,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안 제23조와 제25조는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취지와 이유를 의견제출서에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, 다수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서에 표시하는 등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24조는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▶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, ▶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, ▶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로 하였음.
- 안 제26조는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27조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속 위원회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인에게 검토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28조는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의 제·개정과 폐지의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음.



- 그동안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규칙에 대한 의견제출 근거 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었는데, 개정안을 통해 주민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.
- 이와 함께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 · 시행(2022.1.13.)되면서 주민의 직접참여와 의회의 대표성 · 책임성을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.
- 다만,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입법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7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월 2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규칙을 대상으로 제정·개정·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, 조례로 위임된 규칙 제정·개정·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함
(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).

-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, 제출 제외대상을 명시함
(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).
- 의견제출 검토 및 보완요구, 결과통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
(안 제26조 및 제27조).
- 의견 반영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8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2) 입법예고('21. 11. 25.~12. 18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(제23조부터 제30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제출

제23조(주민의 규칙 의견제출) ① 주민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(이하 “의견제출”이라 한다)하려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의견제출서(전자문서를 포함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주민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견제출을 처리해야 한다.

제24조(의견제출 제외대상)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
2.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
3.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

제25조(의견제출서 작성방법) ①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.

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.

제26조(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)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(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인”이라 한다)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,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27조(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) ① 시장은 의견제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견제출서의 내용과 관련된 시 소속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② 시장은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

2.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

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의견제출인에

게 통보해야 한다.

1. 의견제출 검토내용 및 의견 반영 여부

2. 제2항에 따라 의견검토를 생략한 경우 그 생략 사유

④ 시장은 의견제출이 제24조 각 호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 사유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⑥ 그 밖에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8조(의견의 반영) 시장은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절차를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.

제29조(차별대우의 금지 등)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30조(비밀 준수의 의무 등)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6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</u></p> <p><u>의견제출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23조(주민의 규칙 의견제출) ①</u></p> <p><u>주민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)</u></p> <p><u>이라 한다) 제20조제1항에 따라</u></p> <p><u>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</u></p> <p><u>과 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을</u></p> <p><u>제출(이하 “의견제출”이라 한</u></p> <p><u>다)하려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</u></p> <p><u>는 의견제출서(전자문서를 포함</u></p> <p><u>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서”라 한</u></p> <p><u>다)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</u></p> <p><u>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주민의 권익 보호 및</u></p> <p><u>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</u></p> <p><u>의견제출을 처리해야 한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24조(의견제출 제외대상) 법 제</u></p> <p><u>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</u></p> <p><u>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 련되지 아니하는 사항</p> <p>2.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</p> <p>3.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</p>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25조(의견제출서 작성방법) ①</u></p> <p><u>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26조(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) ①</u>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(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인”이라 한다)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<u>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, 이송한 후에는 자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려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7조(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) ① 시장은 의견제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견제출서의 내용과 관련된 시 소속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<u>2.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<u>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의견제출 검토내용 및 의견 반영 여부</u></p> <p><u>2. 제2항에 따라 의견검토를 생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<u>략한 경우 그 생략 사유</u></p> <p><u>④ 시장은 의견제출이 제24조 각 호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 사유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</u></p> <p><u>⑥ 그 밖에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28조(의견의 반영) 시장은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절차를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29조(차별대우의 금지 등)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30조(비밀 준수의 의무 등)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<u>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</u> <u>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</u> <u>니 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</u> <u>준수해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에 위임한 주민의 규칙 제정·개정·폐지와 대한 의견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,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(02-2133-6692)